

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

(앞쪽)

등록번호		발급일	
인적사항	성명	생년월일	
	주소(도로명까지)		
신상정보	혼인경력 및 자녀유무 []초혼 재혼([]이혼, []사별) 재재혼([]이혼, []사별) 자녀([]유, []무)		
	건강상태		
	직업(직종)	직장명	
	범죄경력		
	기타정보		

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상기인의 신상정보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확인자(업체명, 대표자명)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동의서

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본인의 신상정보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고,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 인적사항 및 신상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동의인

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작성시 유의사항 등

국제결혼중개업자는 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2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.

<작성시 유의사항>

- 가.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증 절차를 이행한 후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합니다.
- 나.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다.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(증빙서류 포함)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·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합니다.
- 라.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서류 제출 또는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를 거부하여야 합니다.

<제출서류>

- 가.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
- 나.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(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)이 발행한 건강진단서(후천성면역결핍증, 성병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합니다.)
- 다.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라.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(성폭력범죄, 가정폭력범죄, 아동학대,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서 실효된 형을 포함합니다.)
- 마.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

<작성방법>

- 가. “인적사항” 란에는 전화번호,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서는 안됩니다. 주소는 도로명까지만 기재합니다.
- 나. “혼인경력 및 자녀유무”란에는 해당란에 체크(√)표시를 합니다.
- 다. ‘건강상태’ 란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, 성병 및 정신질환, 그 밖에 결혼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건강정보를 적어야 합니다.
- 라. “직업”란에는 직종과 직장명을 기재합니다.
- 마. ‘범죄경력’ 란에는 성폭력범죄·가정폭력범죄·아동학대·성매매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바. ‘기타정보’ 란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의정보 중 혼인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와 상대방 국가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.